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시 정 요 구

제 목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내 용

### 1. 천안시 석면안전관리 소홀

#### 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등 관리 소홀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sup>1)</sup>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6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

---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석면건축자재 중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천안시 ○○○○과는 아래 [표1]과 같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변경되었음에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7개 기관에서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되자 일부만 변경신고 하였다.

[표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변경신고 미실시 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소유주	안전관리인		변경신고 완료일
			변경전	변경후	
1	○○○○○○○○센터	천안시장	○○○ (2013.12.9.)	○○○(2015.4.14.)	2017.11.16.
2	○○○○○복지관	천안시장	○○○ (2013.11.25.)	○○○(2017.10.12.)	-
3	○○○○○○○○센터	천안시장	○○○ (2014.4.7.)	○○○(2017.7.1.)	2017.11.14.
4	○○동주민센터	천안시장	○○○ (2015.3.3.)	석면건축물제외	2017.11.27.
5	○○○동주민센터	천안시장	○○○ (2014.10.30.)	○○○(2017.1.11.)	2017.11.14.
6	○○○○도서관	천안시장	○○○,○○○ (2014.4.8.)	○○○(2016.1.15.)	2017.11.17.
7	○○○동주민센터	천안시장	○○○ (2014.12.31.)	○○○(2017.11.13.)	2017.11.14

※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래 [표2]와 같이 5개 기관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위 관서에서는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2] 석면안전관리교육 미이수 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일	교육이수
1	○○○ ○○구보건소	○○○	2016.10.17.	미이수
2	○○○○○ ○○○지회	○○○	2015.8.5.	
3	○○동주민센터	○○○	2015.3.3.	
4	○○○동주민센터	○○○	2014.10.30.	
5	○○○○도서관	○○○,○○○	2014.4.8.	

※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소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천안시 ○○○○과 관할구역에는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아래 [표3]과 같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한 사업장 7개소가 있다.

따라서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사업장에서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12-○○호, 2012.○.○.)」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7개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상기와 같이 천안시 ○○○○과는 석면 비산 정도 홈페이지 미공개로 인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석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3]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농도 미측정 현황

연번	사업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1	○○동 295-6외 5필지 철거공사	(주)○○○○	823,987㎡
2	○○구 ○○동 399-1외 6필지	○○○(업체명)	19,660㎡
3	○○동 58-12 외 8개 지번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주)	30,450㎡
4	○○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철거공사	○○○○○○○○(주)	7,325㎡
5	○○○○○○대 공학 2,3관 리모델링 공사	(주)○○	5,233㎡
6	○○○○고등학교 교사 석면텍스 철거공사	(주)○○○○	5,307㎡
7	○○○○초등학교 석면텍스 철거공사	(주)○○○○	5,394㎡

※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아산시 석면안전관리 소홀

### 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등 관리 소홀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석

면건축물<sup>2)</sup>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6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아산시 ○○○○과는 아래 [표4]와 같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변경된 후에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4개 기관에 대하여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4]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변경신고 미실시 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소유주	안전관리인	
			변경전	변경후
1	○○도서관	○○○○○○지청	○○○ (2014.4.15.)	○○○ (2017.7.1.)
2	○○시청	아산시	○○○ (2016.4.28.)	○○○ (2017.7.2.)
3	○○○○○○길 문화시설	아산시	○○○ (2016.4.28.)	○○○ (2017.7.2.)
4	○○○○연구소	충청남도	○○○ (2014.8.27.)	-

2)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석면건축자재 중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 아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래 [표5]와 같이 7개 기관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5] 석면안전관리교육 미이수 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일	교육이수
1	○○○○○○	○○○	2015.9.10.	미이수
2	○○○ ○○ 어린이집	○○○	2016.7.18.	
3	○○○○○ ○○캠퍼스	○○○	2013.11.1.	
4	○○ ○○○○복지관	○○○	2016.7.18.	
5	○○ ○○병원	○○○	2015.4.17.	
6	○○농협	○○○	2016.7.18.	
7	○○○○○금고	○○○	2016.7.18.	

※ 아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소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아산시 ○○○○과는 관할구역에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아래 [표6]과 같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한 사업장 5개소가 있다.

따라서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사업장에서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12-○○호, 2012. ○. ○○.)」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6]과 같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5개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상기와 같이 천안시 ○○○○과는 석면 비산 정도 홈페이지 미공개로 인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석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6]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농도 미측정 현황

연번	사업명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1	○○○로 ○○○○번길 ○○-○○번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주)○○	8,733㎡
2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슬레이트 지붕 철거공사)	(주)○○○○	8,819㎡
3	아산시 ○○면 ○○리 504번지 일대 방치폐기물 처리공사	(주)○○○○○○○○	8,580㎡
4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2017.2.6.~ 2017.2.17.)	(주)○○○○○○	5,457㎡
5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2017.5.8.~ 2017.5.17.)	(주)○○○○○○	5,249㎡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 아산시장은**

**[시정]**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변경신고와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변경신고 및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의 해체·제거 작업 시 사업장 주변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